

인권정보자료실
CPh1.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2000. 9. 5

주 최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PeaceNet, YMCA (이상 29개 사회단체, 가나다순)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2000. 9. 5

주 최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PeaceNet, YMCA (이상 29개 사회단체, 가나다순)

목 차

▶ 제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청회 발표자료	3
/ 라봉하(정보통신부이용정책과장)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33
/ 유진식(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39
/ 전용휘(PeaceNet 사무처장)	
녹취 - 제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51
▶ 제2부 법률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85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법률 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103
/ 백옥인(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교수)	
녹취 - 제2부 법률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109
▶ 부록	
입법예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141

※ 지정토론자 토론문은 녹취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일시

2000년 9월 5일(화) 오후1시~6시

장소

서울YMCA 천교실

주최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동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
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
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
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
동연합, PeaceNet, YMCA (이상 29개 사회단체, 가나다순)

㉑ 제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 사 회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 발 제
유진식(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리봉하(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전응휘(PeaceNet 사무처장)

· 지정토론
김영춘(국회의원, 한나라당)
신종철(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실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청회 발표자료

- “제4장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을 중심으로 -

라봉하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발표자료에 포함된 개정법률안은 아직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내부검토 안이며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논의의 과정을 통하여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입장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정보에 대한 대책

□ 현행법 규정

- 현재 인터넷 및 PC통신상의 내용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법규정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음란한 통신'을 처벌하고 있는 제48조의2(전기통신이용음란죄)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53조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53조의2가 있다.

□ 불법정보 개념의 도입

- '불온통신'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이를 불법정보의 개념으로 대체한다. '불법정보'는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정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정보와 성인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하였던 '불온통신'개념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 '불법정보'와 유통이 제한되는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구분해서 취급하도록 한다.

※ 불법정보의 예

-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정보 : 아동 포르노 등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 : 살인청부 소개 등
-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 : 살인부추기 등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7. "불법정보"라 함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정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

-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는 기본적으로 민간감시망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민간감시망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의한 법정기구로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동 법 제53조의2제4호)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정보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권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44조(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등)① 누구든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정보가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고지할 수 있다.
-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를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한 이후에도 당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 ⑤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불법정보 처리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이 불온통신의 유통에 직접 책임을 지고 규제하기 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법구조로 변경한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시민단체 등의 신고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고지 등을 통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해서 알았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자기책임에 의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기책임에 의하여 불법정보를 삭제하는 것이므로 시민단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고 및 알림(고지)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를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명령

-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부장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취급거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되, 의견청취 등의 적법절차를 마련하고 이의 위반에 대한 처벌내용을 완화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5조(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등 명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성명 또는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가 의견진술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단서에 의한 공시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방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과태료) 제45조제1항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의 필요성

- 정보분별력이 낮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PC통신·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청소년 이용자의 특성에 맞춰 정보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활용하여 자녀와 학생의 정보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다른 한편,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고 성인층의 접근을 허용하는 기술적 장치의 부재로 유통이 가능한 유해정보가 사실상 유통이 금지되는 결과를 가져와, 인터넷컨텐츠산업 육성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유해정보(이른바, 성인정보)에 대해서 성인층의 접근을 보장하되,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의 필요성이 있다.

□ 등급기준 및 표시방법의 공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등급기준, 표시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여 인터넷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공감할 수 있는 등급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에서는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규정될 것이다.
- '등급기준'은 정보제공자가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인터넷 콘텐츠에 표시되는 등급은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 동향과 한국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널리 보급된 등급기준은 인터넷내용등급협회(ICRA)의 RSACi이다. 인터넷 콘텐츠에 표시된 등급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등급 카테고리 및 단계구분은 그대로 사용하되 각 카테고리 및 단계구분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한국사회의

특유한 내용을 적용하도록 한다. RSACi 등급기준의 특징은 등급부여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가능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가치판단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RSACi (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on the internet: 미국 오락용 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 인터넷 내용등급 체계)

구분 등급	색 스	신체 노출	어 투	폭 력
0	성행위 묘사 없음, 로맨스	신체 노출 없음	일상속어, 모욕적인 말투 없음	폭력적인 내용 없음
1	정열적인 입맞춤	신체가 드러나는 옷	가벼운 비어 또는 인체기능에 빚댄 가벼운 은어	격투로 인한 살상 신체이 심각한 피해
2	옷을 입은 채로 나누는 성적 교감	신체 일부 노출	절제된 비어, 성기관을 빚댄 용어 사용하지 않음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상해, 살상 위협을 넘어선 보복
3	노골적이지 않은 성적 교감	신체의 정면 노출	외설적인 어투, 모멸적인 욕설, 공격적이며 저속한 어투	피투성이 살상, 사람에 대한 상해 또는 살인
4	노골적인 성행위	자극적인 장면 노출	성에 관련된 노골적인 비속어 사용, 노골적으로 내뱉는 혐오스런 말투	무분별한 폭력, 잔인하고 이유 없는 폭력

- 등급의 '표시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 콘텐츠의 특성상 off-line에 서와는 달리 인터넷에 맞는 등급표시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월드와이드웹컨소시움(W3C)이 1995년에 발표한 인터넷내용선택을 위한 기술표준(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PICS)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등급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정보제공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부여한 등급을 PICS 코드로 만들어서 콘텐츠에 meta-tag의 형태로 붙이는 것을 말한다.
- 등급표시 여부 및 표시할 등급내용은 정보제공자가 원칙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등급표시의 확산을 위하여 정부는 권장시책을 할 수 있다.

제46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등급의 기준·표시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의무

-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거나 확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등급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정보에 대하여 등급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표시의무가 on-line상에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등급표시는 이용자의 컴퓨터의 설치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나 브라우저에 의해 자동적으로 식별되게 하고 스크린 상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유해정보의 구분격리의 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7조(청소년보호를 위한 등급표시 등) ①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거나 확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 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자가 이를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에 대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등급분류신청

- 인터넷 방송, 인터넷 영화, 온라인 게임 등 사전등급분류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일반에 공개이전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등급조정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등급이 표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후심의라고 할 수 있으나, 인터넷방송, 인터넷영화, 온라인게임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우 사전에 등급을 부여받아 콘텐츠 유통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청에 의해서 사전에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전등급부여를 하는 것의 위헌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정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위헌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제49조(등급분류신청)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접수 및 절차, 수수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대상

- 등급제기반의 확산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 공공시설,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이용하여 특정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등급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한 정보환경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제49조(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①학교, 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등급을 인식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규정 도입의 필요성

- 전자상거래·여가취미·학습·동호회 활동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 사이버성폭력·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의 정보이용자를 보호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은 미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정보이용자의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통신 문화의 건전화에 위한 정보이용자의 의무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 사이버공간의 정보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정보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적·권고적 규제 외에 입법적·의무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 사업자와 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건전화를 위한 일반적 의무규정을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질서확립에 관련 당사자가 모두 협력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사업자 윤리강령의 제정 실천¹⁾에 관한 일반적 근거조항을 도입하여 자율적 정

1) ※ 유사사례: 기술사법시행령 제3조 (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라 한다)는 기술사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화노력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현행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1항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²⁾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1호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기 위해서 '정당성'에 대한 일정한 심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
- 이와 같은 법해석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편집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제공자, 정보매개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위의 해석에 의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불법정보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며, 정보매개자도 대부분 전기통신사업자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

2)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서비스거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이용약관 등을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내용에 대한 삭제, 이용거부권 등의 일련의 편집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전기통신역무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를 거부할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권(사업법 제53조 제3항)이 발동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편집권'이 있다는 법해석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전기통신역무를 계속 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법해석원칙에 따름).

적 책임을 법해석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지만, 전기통신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사업자만을 의미하므로 비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o 영국⁴⁾과 독일⁵⁾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일련의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가 편집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삼자가 제공한 정보의 유통에 관해서 법적 책임을 진다.⁶⁾

4) 영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즉 영국의 1996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은 명예훼손소송에서 소제기를 당한 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a defence)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첫째,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statement)의 저자(author), 편집인(editor) 또는 출판인(publisher)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 둘째,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출판과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셋째,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출판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그 출판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특히 첫 번째 사유와 관련하여 동 법 제1조 제3항은 “자신이 효과적인 통제를 가할 수 없는 사람에 의해 명예훼손적 표현이 전송 또는 이용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의 운영자 또는 통신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자”를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 저자, 편집인 또는 출판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바로 이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항변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변사유를 입증할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가 그렇게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정의 내용은 나름대로 법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는 독일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는 바, 1997년 7월 22일 제정·공포된 「정보통신서비스법(Das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IuKDG)」¹⁾은 그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동 법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모두 포섭하는 개념인 “서비스제공자(Diensteanbieter)”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어, 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 법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제공자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진다(Art. 1 § 5 (1)). 이것은 정보제공자(IP)의 책임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이 제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Art. 1 § 5 (2)). 셋째, 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이 제작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Zugang)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Art. 1 § 5 (3)). 두 번째 규정과 세 번째 규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ISP)의 책임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경우에 불법적인 정보의 이용을 차단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Art. 1 § 5 (4)).

-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 유통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명문으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을 때,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있으므로 법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하여, 예측가능성의 확보와 정보통신산업의 위축효과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⁷⁾

-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전제로 불법정보 유통방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변경하

6)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제삼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판결이 주목된다. 첫 번째 경우는 *Cubby, Inc. v. CompuServe Inc.* 판결 [776 F. Supp. 135(S.D.N.Y. 1991)]로서, 이 판결의 독특한 논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사건의 담당판사인 Peter Leisure에 따르면 CompuServe는 출판인(publisher)보다는 서점소유자(bookstore owner)나 도서배포자(book distributor)에 가까우므로, 즉 CompuServe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인지한(actual knowledge)” 경우나 CompuServe의 지위에 있는 이성적인 者(reasonable person)가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의 명예훼손적 성격에 대한 인지를 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바, 실제로 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Leisure판사는 CompuServe에 대해서 신문사와 같이 책임이 완전히 인정되는 출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화사업자와 같이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는 공중통신사업자도 아닌,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되는 서점소유자나 도서배포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1995년의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판결 (N. Y. Sup. Ct. May 24, 1995)로서, 이 판결에서 담당판사인 Ain은 위에서 설명한 *Cubby*판결과는 달리, 기존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따라 Prodigy는 편집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Ain판사는 CompuServe와 Prodigy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로, 첫째, Prodigy는 컴퓨터게시판상의 내용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대중과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였다는 점, 둘째, Prodigy는 이러한 통제권을 자동차단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게시판운영자들(Board Leaders)에게 시행하도록 요구되는 지침들을 통해서 행사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Prodigy는 분명히 자신의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나 표현들에 대한 편집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Prodigy는 배포자(distributor)라기보다는 출판인(publisher)이므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위의 두 판결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CompuServe판결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편집통제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즉 편집통제권의 실제적 행사의 가능성 그리고 명예훼손법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해서, 다소 절충적인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7)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없던 책임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론상 도출이 되는 법적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면책규정을 분명히 하면, 오히려 책임이 제한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정보통신산업 육성효과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는 법적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통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한 책임인데,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무제한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법 제5조의 태도와 같이 타인이 유통시킨 정보 중에서 당해 정보의 내용을 알았고, 당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능한 경우로 책임을 제한하도록 한다.⁸⁾

o '단순히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에서 망접속만을 제공하는 ISP를 의미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단순히 접속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법 제5조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단순히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나 해외의 정보에 대한 접속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하여 법적 책임이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8)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법 제5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단순 매개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50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1.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

2. 당해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능한 경우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단순히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조성을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실천할 수 있다.

4.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책

사이버범죄의 처리원칙

o 사이버범죄를 off-line상의 범죄(이하 「현실범죄」)와 법적으로 같이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달리 취급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이버범죄를 현실범죄의 보조수단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가 이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on-line범죄와 off-line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o 사이버 범죄의 실시간적 전파성(확산성), 익명성에 의한 범죄에의 접근용이성, 적발 및 입증의 곤란성 등의 문제를 입법정책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가 아니면 기존의 처벌법규로써 대처할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

- 사이버범죄는 접근용이성이나 익명성, 무한편집능력으로 인한 모방성(복제나 패러디 또는 링크 등) 등의 범죄조장요인들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사이버범죄가 「범죄」임을 선언하고 그 경고의 과정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등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나 응보적 처벌로써는 보상되지 않는 현재적 피해가 사이버공간을 타고 계속하여 확산, 증폭되는 성향을 가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재의 법적 수단들(법원의 가처분 등)은 시간을 다투는 사이버범죄 피해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결합되어 있는 만큼,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그 존재여부(또는 삭제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신속성·간이성을 가지는 특별한 피해구제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개별 범죄유형별 검토

- 무한복제가능성 및 신속전파성이 특징인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정도가 다른 간행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보다 훨씬 크지만, 현행의 명예훼손죄의 규정은 일반명예훼손과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때의 출판물들은 off-line상의 매체만 예정하고 있어(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를 출판물로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 사이버명예훼손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법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이 가중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도록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사이버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유형들은 기존 형법상의 사

- 9)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범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10.09선고 97도158>

기죄(제347조), 컴퓨터 사기죄(제347조의2) 등 현행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허위의 통신을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가능하다, 전기통신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전체에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ID)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를 이관하였다.

- 현행 도박죄와 복권죄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246조, 제247조 및 제248조이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도 도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행위법의 경우 사행행위나 유사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할 뿐,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또한 형법상의 도박죄는 필요적 공범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공범성이 희박한 사이버도박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이버도박에 현행법을 적용하거나 이용자를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여서는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이 필요하다.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죄를 사이버공간상 음란정보유통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¹⁰⁾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규정을 이관하도록 한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아동포르노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00년에 신규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의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 의하여 규제가 가능하고, 음란한 내용의 정보가 담긴 비디오테이프나 CD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죄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10) * 대법원 판례(1999.2.24, 98도3140)

컴퓨터정보통신회사의 사설게시판을 통하여 수수료를 받고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프로그램파일 73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형법 제243조에 따라 유죄를 적용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피고인들이 판매하였다는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라고 하여 사이버음란물에 형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이 아니라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인에 대한 음행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거나 윤락 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법령으로 규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 신설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간음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권유·유혹·알선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지 않지만,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불법정보의 고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 조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사이버성폭력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성적인 내용을 특정인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음란성이 없는 글·그림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처벌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off-line에서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on-line상의 행위만을 처벌하는 법규를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개념정의도 분명하지 않은 만큼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조항을 입법하기보다는 on-line에도 적용가능한 성폭력특별법의 조항을 확대하는 정도의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명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익명성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익명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나, 이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면,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에 타인의 명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하지 않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면 족할 것이다.

제52조(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3.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6.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7.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8.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5. 정보이용자 피해구제

○ 정보이용과정에서 정보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에 권익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권익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민형사소송절차와 같은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익구제에는 어려움이 있다.

○ 정보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그 정보내용이 게재된 사이트를 관리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고, 또 사이트 관리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표현의 자유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만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여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는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나 허가받은 방송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어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정보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정보의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구제와는 별도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피해발생시 이를 적절히 구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요구에 의한 피해구제 이외에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등에서 문제될 수 있는 피해보상의 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다.

제53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52조 제1호 또는 제6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신청 및 제2항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52조 제1호 또는 제6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피해보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한다.

⑤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피해구제절차에 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불법정보"라 함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정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제4장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

제1절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제43조(불법정보의 제작·유통 금지) 누구든지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제작·유통 또는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등) ①누구든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정보가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고지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를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한 이후에도 당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에 의하여 제공

되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불법정보 처리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등 명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성명 또는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가 의견진술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단서에 의한 공시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방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제46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등급의 기준·표시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7조(청소년보호를 위한 등급표시 등) ①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거나 확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 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자가 이를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에 대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8조(등급분류신청)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접수 및 절차, 수수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①학교, 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등급을 인식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이용자의 피해구제

제50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1.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

2. 당해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능한 경우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단순히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조성을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실천할 수 있다.

제51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영리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3.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6.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7.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8.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제3절 이용자의 피해구제

제53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52조 제1호, 6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신청 및 제2항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54조 제1호, 제6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피해보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한다.

⑤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피해구제절차에 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55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과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청소년보호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또는 불건전 정보유통방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위촉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제57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57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 ①위원회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과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불건전정보신고센터의 운영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3.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의 촉진 및 등급관련서비스의 제공

4.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피해구제
 5.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을 위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
 6.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7.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조성과 관련한 활동 및 이에 대한 대책수립의 건의
 8. 기타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 ②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음성, 문자,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정보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8장 벌칙

- 제80조(벌칙 등) ①사실을 적시하여 제55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제55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제55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제55조제3호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제55조제4호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제55조제6호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⑦제55조제7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명의

를 도용당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⑧제55조제8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자는 해당 형벌 또는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 조(과태료) 제45조제1항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9.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4조(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본다.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유진식(경희대학교 법과대학)

1. 처음에

본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을 대폭 보완하는 것으로 써, 주관부서인 정보통신부의 표현을 빌리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을 위한 규정을 대폭 신설" 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통신의 유통공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세계를 열어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변화, 즉 새로운 부(富)와 문화 등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이 이 사이버공간도 빛의 부분뿐만 아니라 그림자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의 침해나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의 조성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제도에 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본법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항목에 망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라도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동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국가와 시민(정보통신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사이의 평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동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간섭은 당연하다고 하고 후자의 경우,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동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과잉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양자가 서로 의견을 일치시켜 가는 방법은 없을까? 본고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인가

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다시 말해서 각자가 다를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경우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으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양자가 논의를 벌일 수 있는 토대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필자는 국가의 간섭이 어느 정도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설명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판단의 기준 - 국가기능의 변화

20세기는 이른바 '총력전'의 시대였다고 말해진다. 국제정치질서는 가깝게는 볼 경우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세력이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진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에는 진출하려는 측이나 이를 막아내려는 측이나 국가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각축을 벌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2차대전 후의 냉전기를 거치면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정치질서의 구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라는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가단위의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국가중심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한 국가내의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키우고 통합해서 그것을 외부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 개인의 사상이나 기본적인 활동보다는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거기서 국가의 역할은 먼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균질적인 사고와 행동양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무엇이 도덕이며, 무엇이 진리인가를 결정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형식이 있었다. 1)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는 각 개인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시대인가? 이미 냉전의 시기는 지나갔고, 이를 대신하여 균질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다시 등장한 것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

1) 1968년에 제정되었던 국민교육헌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의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여 선언하고 있듯이 지금은 이른바 국제화 내지 글로벌리즘의 시대로써 기존의 국가의 장벽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통합작업에 그치고 각 개인의 영역은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3. 본 법률안의 검토

(1) 이념적인 측면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긍정할 경우, 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이념적인 측면이다. 본 법안은 정보통신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정보통신의 기술, 종사자와 이용자, 정보통신의 내용 등, 자세히 소개할 필요도 없이, 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시대적인 변화 즉, 국가의 역할이 변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도적인 측면

법안의 문제점의 국가의 지나친 규제도 문제이지만 그 규제를 행하는 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적법한 규제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적법한 적정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법안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제4장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의 부분을 소재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행정조직

제4장의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불법정보의 제작·유통금지제도와 등급표시제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정보

통신윤리위원회이다.)²⁾ 그런데 이 정보통신위원회는 행정조직법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동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면 법률안 제58조에서 단지 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어느 기관에 속하며 그 기관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동법이 정보통신부의 관할로 되어 있고 그 밖의 규정(제59조 업무)을 보아 정보통신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행정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시민)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단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심의 등에 응하고 직접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행정기관이 그것이다. 그런데, 동법안의 규정, 즉 제58조의 설치규정 및 제59조의 동위원회의 업무규정을 살펴보면 이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상의 규정이나 행정조직법이론에서 볼 때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논의가 단지 형식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전자에 속하는 행정기관은 이른바 외국(外局)으로서 소속된 기관과는 인사나 업무 등에서 독립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본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규제업무를 행하는 경우 그 절차는 이른바 준사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대로 독자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위원회는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형사고발권을 갖고(법안 제45조 제3항), 피해자구제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이 문제가 단지 형식논리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동위원회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법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직을 갖추고 적정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법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에서 동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채 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② 집행절차

여기서는 불법정보에 관한 동위원회의 처분절차를 소재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률안 제43조는 불법정보의 제작·유통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동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2) 등급표시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도 관계가 있고 동위원회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중에서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서로서 이를 고지'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에 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를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할 수' 고, 고지를 한 이후에도 당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도록 건의 할 수 있다(동법안 제45조제4항, 제46조 제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동법안 제46조 제1항).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의 애매성이다. 즉 법안에 따르면 그 기준으로서 단지,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 만을 들고 있다.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으로 이것을 가지고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처분절차의 적정성의 여부이다. 법안에서는 단지 14일의 기간을 두고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정보라고 판단되는지의 여부는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로 인하여 상대방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잃을 수도 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사안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법안에서는 의견청취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의견진술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안의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행정절차법상의 청문규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맺으며

이상에서 법안은 국가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법안의 규정은 지나치게 규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를 집행하는 행정조직상의 문제와 또한 집행절차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개괄적인 이야기와 법안의 한정된 부분만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것은 법안 전체와 관련된 이야기이며 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에 대한 철저한 논의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1. “통신질서확립법”과 사회적 의견수렴

정통부가 입법고시 예정으로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전혀 개정법률안이 아니다. 원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부칙포함 총 35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개정법률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법안은 총 91개 조항으로서 원래 법안의 세배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안이다. 따라서 사실상 원래 법안의 개정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정보통신부의 고유업무영역을 새롭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으로서 정보통신부법이라고 부를 만한 법이다. 실제로 이 법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 이용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통신질서확립, 정보통신망의 안전성확보, 이러한 일들을 위한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통신공간에서 생겨나는 일체의 사회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부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갖고 어떻게 관련업무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기 전에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이렇게 방대한 내용의 법안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이 거의 전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나 관심집단들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의 절차없이 - 혹은 있었다 하더라도 법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비용효율적이며 형식적, 행정편의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지난 7월 20일 공청회가 있기 전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지어 언론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심지어 공술인들조차도 불과 공청회 며칠전에야 법안을 받고 토론준비를 해야 하는 지경이었다.

차제에 이같은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대개 현재 정부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총괄적인 사업방향과 관련하여 부처

별 중점추진사업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부처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 정통부의 경우 보통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이나 산하기구 - 이번의 경우 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에서, 혹은 몇몇 전문가들에게 프로젝트를 주어 관련 연구와 정책을 수립토록 한뒤 이를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몇몇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고시를 하기전에 대단히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인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을 밟는다.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의 경우에도 그러한 과정을 전형적으로 밟았다.

사실 사안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이미 기존에 있던 제도를 큰 골격의 변화없이 보다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경우라면 이같은 입법절차가 그다지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나 정부부처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기 어렵다.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의 경우에도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표출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등급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문제 등 세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직 상세하게 밝혀지지 않는 않지만 개인정보보호(제23조 - 제32조)의 경우 정보보호센터에서 대부분의 준비작업을 맡았으며 인터넷 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준비작업을 각각 맡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알기로는 정보보호센터는 정보통신사업자들이나 재경부산하 소비자보호원측의 의견은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간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은 거의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개정법안을 보면 절대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인수합병시 종전 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전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업체가 이용자에게 이전을 공지하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종전 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달성이 되었으면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안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파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만약 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되면 대개 업체들

은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약관 등에서 이를 규정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사실상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조항인데도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 한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사실상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청소년들의 거래가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오직 사업자의 이해관계만 고려하여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인터넷 등급제(제47조 - 제52조)의 경우 아마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여러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왜 그 위원회가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요청할 때에 왜 대부분의 주요한 여성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빠질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어떤 단체의 경우는 그러한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고는 있었지만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은 고사하고 토론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고 겨우 등급기준을 토론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법안이 공표되었는데 정보통신부가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제14조 - 제17조)은 원래 공청회때 제시되었던 안에서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조항만 있었는데 공청회때 왜 이 조항이 들어가는지 전혀 법률적 구성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사실상 삭제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2차 초안에서는 1개 조항에서 4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현재 민간재단법인이며 도메인등록과 관련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메인분쟁조정기구 설립안이나 주소자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관리/감독권한에 관한 내용은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정관상 인터넷 주소정책을 제시하게 되어있는 주소위원회와 전혀 사전 의견수렴이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주소위원회가 나중에 이를 알고 정통부측에 이러한 조항들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법안 수정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2.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법적 규제의 한계

의견수렴문제도 있지만 특별히 정보통신영역에서의 입법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해외의 입법사례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보통신영역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이제까지 현실세계에서 통용되던 법논리를 통신공간에도 그대로 연장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미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적 규율문제는 법학분야에서도 독자적인 학문분야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법적 규제의 이상적인 모델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통신네트워크 상에서의 법적 규제문제는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국가의 영토에 따른 사법관할권(Jurisdiction)의 문제 때문에 규제가 다른 나라에까지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각 국가간에 가치나 규범, 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규제의 틀을 세계적으로 구축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규칙을 만들려면 상당한 정도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초국가적 성격때문에 특정 국가내에서 과도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얼마든지 해당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 이동하여 해당국가를 상대로 하는 정보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법적 강제수단에 의한 규제가 오히려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규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정보통신공간의 쌍방향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이용자가 얼마든지 정보공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규제가 도입될 경우 그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비영리 정보서비스나 개인의 정보서비스에까지도 광범위하게 미치게 됨으로써 사실상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통신품위법(Communicatin Decency Act)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유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정보제공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능동적인 요청에 의해서만 수신할 수

있는 까닭에 대중매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이유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에서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입법사례에서는 사전에 수개월에 걸친 사회 각계와 전문분야 인사들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들은 후 온라인으로도 네티즌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준 후 그러한 내용까지 충분히 수렴하면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 추세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나라마다 상당히 편차는 있으나 법에 의한 규제(legal regulation)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self regulation)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현실세계에서 법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제들이 양적인 측면에서나 속도면에서 엄청나게 높은 비례로 변화하는 사이버공간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의 입법고려사항으로 반드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이버공간에 질서와 문화를 구축해가는 일은 반드시 정부의 여러 부처들간의 상호 협력과 연계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유관법률중 정보통신부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입각한 사업추진은 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추진하게 되는데 정보화촉진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재정부장관이 되고 입법, 사법부 및 관련행정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간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골격 위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정보통신부의 여러가지 업무영역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이 법이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던 내용을 대부분 법조항으로 끌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주로 권장사항이었던 것을 보칙에 벌칙규정을 두어 상당부분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정통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전의 “정보촉진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증추를 이루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일반 사법당국이 맡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의 중요한 변화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한국정보보호센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한국정보보호원으로 승격시키고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을 두어 동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정통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정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통제권한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정책수립 및 관리기관지정, 도메인분쟁조정정책 및 조정기구의 운영 권한을 정통부의 고유업무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개인정보보호나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자원관련 정책에 관하여 정보통신부가 이를 고유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사실은 앞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대한 설명에서도 밝혔듯이 현행 법제도에서는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일을 수행해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검찰이,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법무부, 검찰이, 청소년유해정보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업무가 왜 정보통신부의 고유업무영역으로 할당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현정부 초기에 제시되었던 행정조직개편안에서는 산업자원부와 과기부, 정통부가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고 정보통신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정책은 모두 개별부처에서 직접 다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온 경우도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3. 시민사회의 자율성축진인가 정부의 역할강화인가?

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일관되게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 메카니즘의 강화론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것은 사회 각 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로 더 세분화,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국가에 의한 지도, 관리, 감독기능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 압축성장을 겪어오면서 구축된 우리의 경제, 사회체제가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규제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동안 국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그러나 이미 상당기간동안 시민사회 자율적으로 기능수행을 해 온 영역에 새삼스럽게 정부가 소관업무영역을 자임하고 개입하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통신질서확립법” 제16조에 나와있는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조항이다. 현재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는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com, .net, .org와 같은 성격의 국제최상위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으로서 ICAN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정에 따른 영문알파벳 두자로 표시하는 각 국가별 최상위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으로서 우리나라 .KR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주소위원회가 관련정책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조항에서는 현재 국내 이용자들이 상당수 가입하고 있는 gTLD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미 .KR에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일을 새삼스럽게 정통부장관이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ccTLD의 경우도 향후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 사는 교포들을 위해 .us.kr, .jp.kr과 같은 제2계층 도메인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해외시민권자들의 이용영역이 되는데 한국정부가 이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정통부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주소자원은 공적자원(Public Resource)이며 미국의 경우도 상무성이 ICANN과 계약관계에 있고 루트서버에 대한 권한을 상무성이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법조항이 나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KR에 대한 권한부여는 과거 존 포스텔이 IANA를 통하여 할당한 것으로서 한국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과거 인터넷 초기 국방성에서부터 최후의 상무성에 이르기까지 미국연방정부는 인터넷의 루트서버의 유지와 관리를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가면서 민간과의 계약에 의해 운영해 왔다. 이에 반하여 한국인터넷의 경우에는 여러차례 조직상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상당한 수준까지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국내 도메인 이용자수의 증가는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충분히 현재 도메인등록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에 의해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16조 2항에서 정통부장관에게 인터넷 주소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적으로 ccTLD의 관리자(Manager)가 고유하게 보유하는 권한으로서 현재와 같은 내용의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정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들을 결정해 가고 있는 ICANN의 ccTLD 그룹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문서초안("Best Practice & Delegation/Redelagation")에 따르면 ccTLD의 관리자의 권한은 국내인터넷이용자집단(Local Internet Community)과 IANA/ICANN 양자에 의해서 그 권한의 근거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국내인터넷이용자집단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각국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측 자문위원회(Government Advisory Group)는 이와는 약간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국내인터넷이용자집단과 IANA/ICANN 양자로부터 ccTLD에 대한 권위가 생성된다고 하는 기본개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KR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소자원인 것도 결코 아니다. ICANN차원에서 신규로 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할 경우 그 관리 권한은 개별 서비스업체(Registry 운영업체)에게 넘어가며 얼마든지 특정 국가를 겨냥한 도메인생성이 가능하다. (예, .korea, .skorea, .southkorea, .한국, 또한 제 2계층에서도 .korea.com, .kr.com에 대해

여 한국정부는 정책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개별 최상위도메인 데이터베이스나 등록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침은 ICANN차원에서 만들어지지 .kr이라고 해서 한국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현재 "통신질서확립법"의 제16조는 대단히 그릇된 사실과 개념이해에 기초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국 정통부만의 특유한 법조항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는 재단법인을 통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주소정책에 대한 기능수행이 오랜기간 이루어져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정통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대안적 중재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와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에는 대안적 중재기구(ADR)라고 볼 수 있는 기구가 세가지나 새롭게 제시되어 있는데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제17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36조 - 제42조), 정보통신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제56조, 제57조)에 대한 규정이 그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대안적 중재기구가 요청되는 이유는 기존의 법률로서는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도 너무 길어서 신속하게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적절한 분쟁해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사법적인 심판과정을 거치기 전에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중재제도를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우 그러한 중재제도가 반드시 현재 이 법안에서 제시된 형태대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 또한 여러가지로 따져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이나 정보통신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중재기능은 꼭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두기 보다는 행정자치부나 법무부/검찰 산하에 두거나 혹은 약식재판과 같은 형태의 제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도메인분쟁조정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영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분야이므로 굳이 법으로 정해서 유일한

중재기구로 만들기 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이러한 중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이같은 분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사례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정부산하기구의 고유업무로 할당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경직성 예산을 늘리는 주요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4. 결론적 제안들

이상에서 지적한 조항들 외에도 이 법안에는 정보통신 이용자 실명제(제55조 - 인터넷의 익명성은 단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처럼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쟁점들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지만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만으로도 이 법안이 얼마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이 법안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이 법안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 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이나 관심집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도도입의 장단점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규제의 한계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일정기간 적극적인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온라인으로 허용하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하간에 법개정이 행정편의적인 졸속입법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이버공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모든 소관업무가 반드시 정보통신부로 제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규제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려 여러 부처들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이같은 법률을 만들 때에는 소관부처나 추후 부처간 협력, 조정의 방식에 대해서까지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이 법안의 특징은 크게 보아 정보통신부의 기능과 역할, 고유업무영역의 확장과 권한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든 법적 규제의 방식보다는 관련업계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 점에서 상당부분의 내용이 현재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틀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 현재 제시된 법안은 그 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 그것에 추가하여 관련업계의 자율규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시장이나 시민사회내의 자율적인 규제전통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을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그같은 자율적인 규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것에 제동을 거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자율적인 기능수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녹취 - 제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 사회자

우선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경희대학교 유진식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정신 없이 바쁘실 텐데 정보통신부 정보 이용 보호과의 나봉화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시민 단체 쪽에서는 피스넷의 전용휘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국회에 계시고 과학 기술 위원회의 소관 상임 위원인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입니다. 역시 같은 토론자로 함께 하는 시민 행동의 신종철실장 나오셨습니다.

벌써 몇 달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통부 홈페이지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크게 관심이 떠올랐습니다만, 어쨌든 지식 정보 사회에서 온라인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 한계를 어떻게 정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모아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사실은 토론이 오히려 늦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시민 사회가 힘을 모아서 접근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이 두 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제 1부 “지식 정보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와 두 시간 후에 있을 “법률 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이렇게 나누어서, 아마 오늘 첫 토론회는 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고 생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못지 않은 주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사회가 그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정부가 일방적인 룰을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시민 사회 혹은 다양한 여론 당사자와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합의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 패널 여러분들을 대충 보시면 정부 입장을 반영할 분은 과장님밖에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논의를 일방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정부에 비판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겠지만 주제에 맞추어서 제 바램은 가능한 한 균형적인 토론을 통해서 쟁점이 형성되고 그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 합의와 질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이 정부가 내놓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나봉화 과장님의 발제를 우선 듣고 다른 선생님들의 발제를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분 발제자에게 20분 정도의 발제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른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라봉하 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부장님께 소개를 받은 정보통신부 정보 이용 보호과장 라봉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법이 지난 7월 20일에 공청회를 했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이 일을 맡은지가 한 달쯤 되는데 몇 개월이나 몇 년이 흘러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월 20일 공청회를 거치고 나서 공청회라는 것이 원래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통부에서도 그 때 나온 시민 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법안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7월 20일 공청회 안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변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검열이다, 국가 검열이다, 표현의 자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불건전 정보의 유통 방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이 준비되는 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20일에 공청회를 했는데 그 때 나온 의견 중에 대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 내용 등급을 정한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 사회 측에서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가 등급 규정을 정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내보낸 관계 부처 협의안에서는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가 청소년 보호 단체, 시민 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등급 규정을 마련하고 공표하도록 개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 표시 의무 대상자의 범위인데, 원래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보 내용 등급제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 등급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청소년 유해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의 범위가 애매하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데 따라, 그것을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 이런 식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자라고 하면 청소년 보호법상 8조와 12조에 의해서 지정 또는 확인된 자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음란물 유인물로 그 대상이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영리 목적 사업자 등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 처

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책임을 과중하게 할 수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것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음란 정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자간 공유하여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원래 취지는 음란 정보를 불량스럽게 상당히 좋지 않은 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그런 조항을 희망을 했었는데 그것이 개인 정보 보호에 위배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이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로그 파일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수사 기관에 접속 기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삭제를 했는데 아까 신부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8월 28일에 정보통신부 서버가 서비스 거부 공격에 의해서 침해를 받아서 다운이 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그러한 공격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보호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파일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이 7월 20일 공청회 이후로 정보통신부가 법안 수정 작업을 한 주요 내용인데, 그밖에도 여러 가지가 변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 법은 7월 20일 공청회를 한 직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아직 입법 예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부 내부 검토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청회를 하고 시민 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저에게 부담스러운 자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까 신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최하신 분들이 27개의 시민 단체인데 시민 단체에서는 이미 이 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성명서로 발표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부담스러운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저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는 많은 검열 관계라는 제목을 달고 나오는 많은 의견들을 눈이 아프게 봤습니다만 건설적인 비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와 정부의 대화의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불건전 정보의 유통 방지와 관련해서 지금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법에 관한 법

를 개정안이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정보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행 법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상, PC통신상의 내용 규제나 법 규정이 기본법과 정보 통신 사업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통신 기본법에서는 음란한 통신을 처벌하고 있고 또 정보 통신 사업법에서는 불온 통신에 대한 정보 통신 문항을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온 통신에 대해서는 그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불온 통신의 개념을 구체화해서 이를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정보는 그 규정을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정보,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 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어 불법 정보와 상용 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존재했던 불온 통신적인 것은, 유통이 금지될 수 있는 청소년 유해 정보가 어떤 일정한 제약과 조건 하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정보의 예를 들어보면, 우선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정보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동 포르노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다 이런 것은 어떤 홈페이지가 살인 청부 소개 같은 것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범죄 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다 하는 범죄를 부추기는 정보, 또는 마약 사용을 부추기는 정보 그런 사이트들이 불법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법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이 불법 정보가 떠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이 불법 정보에 대한 감시는 누구든지 모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에서는 민간 부문에서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의를 해서 불법 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보 통신 서비스 사용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가 왜 불법 정보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하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지금 사업법 53조에 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법정 기구로서 정보 통신 회사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 및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정보 통신 위원회가 불법 정보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지게 된 불법 정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불법 정보가 시민 단체나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고지 등을 통해서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 사업자가 알았을 경우에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당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자기 책임에 의해서 당해 정보의 삭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 있을 때, 가령 예를 들면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취급거부 등의 명령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 법에서 새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보 통신 사업법 제 53조를 가져온 것인데 사업법 53조에 미비되어 있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적 조항을 보강을 해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취급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적 기능을 두었습니다.

불법 정보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정보내용자율등급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제도의 취지는 청소년들은 일단 사리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 제약을 주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청소년들에게 일차적인 관리 내지 책임을 지고 계시는 학부모라든가 교사들에게 정보 선택권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등급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 기준은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가 청소년 보호 단체라든가 이용자 단체, 정보 통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등급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 나라가 유별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내용 등급 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오락 소프트웨어 자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등급 규정은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어떤 규정을 사용하는가 하면 노출·언어·폭력·섹스의 표현에 대해 0부터 4단계까지 객관적인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기 등급에 대해서 자기 정보에 대해서 각각, “섹스는 상황 묘사가 없기 때문에 0등급이다, 신체 노출에 대해서는 신체가 일부 노출되었기 때문에 2등급이다, 언어에 있어서는 가벼운 언어를 쓰기 때문에 1등급이다, 폭력은 ‘아, 잔인하구나’ 4등급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정보에 대해서 마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에 마크를 하는 이유는 내용등급제를 같이 보완하는 프로그램이 내용 선별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이것을 읽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자가 자기 정보에 대해서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 이용자는 자기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설정 해서 자기가, 또는 자기 자녀가 볼 수 있거나, 또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정하도록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정부가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고 정부는 다만 이런 것을 권장하는데... 권장하는 데에는 홍보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님들이 PC등을 잘 다루지 못

하니까 그런데 대해서 홍보도 하고 소프트웨어를 보급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무 사항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 있듯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정된 후에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서 학부모라든가 청소년들이 선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은 걸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의무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에서 지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예측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유해 테스트를 받고 나면 합법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분류 신청이 있는데 이것이 약간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등급 분류 신청은 서비스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꼭 유해 매체물이 아니더라도, '다섯 살짜리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떤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이것은 다섯 살의 나이에 상당히 합당한 정보라는 인증을 받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 정보에 대해서 등급을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매기고자 하는 분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굳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업자 협회라든가 다른 종교단체 등에서도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급제가 자유화이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고 반응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등급제가 자율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일반 국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효성을 위해서 학교라든가 도서관, 공공 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점의 주인이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책임을 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각 사이트마다 게시판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외국에서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게시판에 온갖 종류의 글이 다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면 좋은 글도 있을 수 있고 남의 명예를 해치는 그런 글도 있을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남의 명예를 해쳤을 경우에 명예를 해친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명예를 손상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사적인 회복의 Balance를 맞춰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라든가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명백한 경우에,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그것을 자기가 삭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아마 이런 조항을 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문에서도 하는 것처럼, "저희 Bulletin에 게시되는 글은 저희 주장이 아니고 저희와는 무관합니다"라는 그런 조항을 두어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 법의 원리를 독일 법에서 받아 왔습니다. 독일 법에 보면,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고,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것이 기대 가능할 경우에 이것을 차단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상에서 범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상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평소 선량하던 사람도 사이버 상에서는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 범죄가 된다면 온라인 상태에서도 그에 상응한 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는 특히 접근 이용성이라든가, 응용성이라든가, 무한 편집 능력, 또 모방성 같은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특히 일반 형법에서 이런 것을 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이버 상에서 그 통계적으로 나타난 피해는 너무나 빨리 전파되고 증폭·확산되기 때문에 빨리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이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킨 행위'는 사기 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도박 행위, 윤락 행위를 알선한 행위, 그리고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일을 계속해서 보내는 소위 말하는 사이버 스토킹, 타인의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하는 행위,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 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여기에 대한 각각의 처벌의

경우는 다 다르고 특히 명예 훼손 같은 경우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 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 같은 경우는 곧바로 죄가 되지 않고 다른 죄를 범했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및 제한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료가 늦어서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에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렸더니 시위하는 편지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윈도우를 하나 마련해서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급제라든가 개인 정보 보호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자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과장님은 정부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우선 불법 정보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차적인 판단권을 갖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경우에 자기 등급을 마크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내용 등급에 관련해서는 보편적인 추세일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효성 측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토론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내용 선별 프로그램을 청소년 이용 기관에 설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정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은 토론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유진식 교수님께 두 번째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진식 교수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법과 대학의 유진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출현에 즈음해서 과연 국가 면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치열한 만큼 기본적인 틀 내지 이념이 충분히 논의가 되

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점을 차지하고라도 현재 이 법에서 우리 헌법이나 또는 정부 조직법 또는 기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원리와는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는 점, 그 두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장미 빛의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다소 냉소적인 그런 평가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런 논의가 양자간에 평행선을 긋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역시 이런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사이버 공간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고, 또 언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 점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새로운 공간, 새로운 문화가 창출함에 있어서 국가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법안이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일정한 하나의 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여기에 계신 나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자간에 상당히 팽팽한,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결국은 양쪽의 주장은 이런 차이점이 나는 것은 그 근간을, 그 이념적인 것을 어디에 두고 있는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양자가 어디에 근간을 두고서 자신들의 주장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점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국가라는 것이 전체적인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즉 다시 말해서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같이 한 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경우에는 어떤 한 개인이나 또는 단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커다란 흐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세기 중반에 유럽 문명이 아시아에 물려든 그런 경우라든가 또는 2차 대전 후의 냉전기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들은 어느 한 개인이나 또는 단체 또 심지어는 어느 한 국가에 의해서도 그것을 막아낼 수 없는 커다란 도도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흐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흐름을 모른다거나 또는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고 거역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근·현대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곡을 겪은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또는 파악했다 했을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지금 현재 국가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세기는 총력전의 시대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삶보다는 이런 개인과 또는 작은 집단들이 모여서 한 국가 한 덩어리로서 힘을 합쳐서 이것을 외부에 부딪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가깝게 설명을 드리면 10세기 중반에 유럽에 자본주의를 동반한 유럽 세력이 들어오면서부터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 국가 단위로 개인적인 힘보다는 국가 단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이 대단히 큰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는 대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본주의를 들고서 들어온 입장, 다시 말해서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또 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힘보다는 국가적인 큰 힘으로 진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진출하는 입장에서도 역시 국가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는 역시 개인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생활 그리고 개인적인 행동 양식 이런 것은 그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그러한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데 어떠한 쪽이 편리한가 이런 관점에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어느 정책 하나를 정한다면 국민은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정책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균질적인 사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동 양식, 이런 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미리 그런 국민들의 균질적인 사고와 예측 가능한 행동 양식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무엇이 도덕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에 있어서는 주로 학교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캠페인, 그리고 심지어는 스포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국민의 균질적인 사고와 예측 가능한 행동 양식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장 상징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1968년도의 국민교육헌장을 들 수 있는

데, 그 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이것을 외우지 못 하면 집에도 보내 주지 않고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외우도록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또는 행동 양식에 대해서 국가가 결국은 깊숙이 관여하는 그런 활동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국제적인 상황이나 또는 시대적인 흐름이 개인적인 구체적인 삶보다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그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9세기 중반부터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 2차 대전 후에 냉전기를 거치면서도 역시 그런 국가 단위의 활동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89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국가 단위의 움직임은 그런 시대적인 흐름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런 국가 단위보다는 지금 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역시 말해 주고 있듯이 개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라든가 각자의 자유 분방한 사고 이런 것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가 단위로 한 덩어리가 되어 에너지를 모아서 그것을 외부에 끼치는 이러한 시스템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것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이전처럼 국가가 국민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 우리 정부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Globalism이나 국제화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번 법률안을 보면 하드웨어에서부터 거기에 흐르는 소프트웨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국가가 손을 대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탈리즘인데요, 국가 단위로 움직이던 국민의 균질적인 사고와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동 양식 이것을 가정한 그런 시대의 국가 시스템에서의 국가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에서의 토탈리즘에 근거한, 국가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는 역시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먼저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는 국가가 개인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해서 '삶이란 이러한 것이다'라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정부의 기능은 이제 지양을 해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제가 이 법률에 대해서 양자의 논의를 좁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함께 생각해야 할 이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법률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 예기와 관련시켜서 한 가지 부분을 소재를 들어서 이 법안의 구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면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정보 통신의 기술이라든가 종사자·이용자, 그리고 정보 통신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이 법안은 아주 방대한 법안인 것, 어느 누구에게 서로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이면적인 측면에서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국가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던 그런 시대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정보 통신망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불법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정보에 대해서 상당한 주체와 그리고 그런 집행 과정이 부분에 대해서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 조직에 있어서 문제인데요 행정 조직에서 불법 정보라든가 또는 등급 자율 표시, 이 부분에서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도 단지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지 실제로 어느 부서에 어떠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표시가 없습니다. 단지 다른 법 조문을 참고했을 때 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는 추정은 할 수 있어도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부처에 소속하게 되는 행정 조직 기관의 경우에 이것이 외부에 다시 말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그 부처 장관, 그 부처장의 자문이나 또는 심의만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는 법적으로 분명치 않습니다. 이것이 단지 내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의견에 자문이나 심의만 하는 기관인지 또는 그밖에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권리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법에서는 양쪽을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부 조직법이나 또는 행정 조직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고 집행 절차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직이 되려면 그에 상응한 조직과 또 법 집행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법 집행 절차에 있어서 이른바 우리 헌법 제 107조 3항에서 이런

행정 기관이 이런 규제를 할 경우에는 준 사법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 사법 절차는 무엇이나 하면 재판에 준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률에 보면 그 내용은 대부분 대통령령 이하로 내려가 있고 이 준 사법 절차도 대단히 거리가 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규제를 하기 위한 행정 조직은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그런 법적인 성격 그리고 그 집행 과정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이나 또는 행정법 조직 이론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하나의 흐름이 아니고 전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가 한 덩어리로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것, 그에 반해서 우리 법안은 아직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은 그 구체적인 면에서 제가 이것은 한 부분만 예를 들었을 뿐인데, 다른 종류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실제로 법령 그것을 규제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규제를 하는 행정 기관과 집행 절차에 있어서 현재 헌법이나 또는 정부 조직법 기타 실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법 이론에서도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사회자

유교수님은 통신방법을 입안한 정부의 관점이 변하는 국가·정부의 새로운 국가 기능의 변화라든가 이런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적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 또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도 입법 관점에서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전용휘 처장님께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 전용휘 사무처장

지금 이 법의 정책 조항 수가 91개 조항입니다. 지금 이 법안이 개정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원래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은 총 조항 수가 35개 조항입니다. 부칙 조항 다섯 개를 빼면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세 배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개정안으로서 대하고 있고 실제로 정보통신부 쪽의 대외적인 홍보도 그렇고 언론 측이 이것을 보도할 때도 그렇고 마치 이 법안이 인터넷 내용 등급제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등급제에 대한 내용은 2부에서 토론이 될 것이고, 그 이외에 지금 이 법안의 도처에서 산재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라봉하 과장님께서 지난 7월 20일 이후에 실제로 정보통신부에서 공청회에

서 나온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정통부의 개정 제 2차 초안이 나왔을 때 시민 사회 단체들이 보인 반응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 사실은 시민 사회 단체들이 이 법안을 처음에 보았을 때, 공청회 훨씬 전입니다. 맨 처음에 이 법안을 보았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조항들이 많아서 이것이 정말 정통부가 이대로 통과시키리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청회용 초안이다, 그것이 그 당시 이 법안을 분석한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청회를 거쳐서 수정·보완됐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는 실제로 너무 어처구니없는 조항이 처음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가지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기본 틀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런 이유에서 이것을 실제로 공청회 이후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처럼 실제로 사회적으로 수없이 많은 쟁점 토론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인데, 충분한 사회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법안이 이루어졌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 20일 공청회를 가질 때만 해도 심지어 언론조차도 이런 법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 왔을 정도로, 그런 법이 과연 준비되고 있었는지. 정통부 쪽에서는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입법 절차의 행정적 요식 과정을 다 거치셨을 테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실제로는 이것이 쟁점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 수없이 많은 이해 관계자와 관심 집단들이 영켜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정보의 의견 수렴 과정을 철저히 밟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법안을 놓고 사회적인 진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의견 수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서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크게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인터넷 내용 등급제,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개인 정보 보호 조항의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통부의 정보보호센터에서 박광진 박사가 주축이 되어서 이 법안의 송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비자보호원 측의 의견도 수렴했고 정보 통신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긴 했는데, 민간 소비자 단체 쪽의 의견 수렴의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수용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기업 인수 합병 시에 종전의 방법에 따르면 기업 인수 합병 시에 개인 정보를 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정보가 인수 합병된 업체로 이전된다는 것을 공지만 하면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이지요.

또 정보 보관에서는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이 일단 달성됐으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그것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면 영구히 파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약관에 이 내용을 끼워 넣어 이용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동의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자신의 수집된 개인 정보는 파기되는 일이 없이 보존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 문제인데, 미성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있어서는 19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개인 정보 수집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는 14세 미만으로 고쳐 놓고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15세에서부터 18세에 달하는 청소년층이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14세 미만 아동으로만 한정해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일방적으로 사업자 쪽이 유리한 그런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왜 누구 말을 더 안 들었느냐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법적인 내용을 보시면 의견 수렴을 어떻게 안 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의견 수렴을 했는지 하는 것이 이 법안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아마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쪽에서 의견 수렴을 할 만큼 했다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단체들이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쪽에 내용 등급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

니다. 그것은 그만큼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가 기존의 시민 사회 단체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견 수렴을 이 메카니즘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다면 그것부터가 사실은 큰 문제였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실제로 의견 수렴에 참여하고 있었던 단체에 있어서도 등급제의 기준조차 아직 확정을 못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있는 초입 단계에서 이 법안이 발표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한 제도는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고, 시민단체들은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점차 끼워 넣는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의견 수렴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셋째로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14조부터 17조까지 나와 있는데 지난번 원래의 초안에서는 '도메인 분쟁 조정 기구를 정통부 장관이 만든다' 딱 한 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청회에서 무슨 지적을 받았냐 하면, 밀도 끝도 없이 이것이 왜 여기 끼어 있느냐, 이것은 법률로서의 성분 요건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빠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나왔던 코멘트였는데, 그래서 저도 없애지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다시 개정안이 나온 것을 보니까 오히려 세 개의 조항이 한 달 만에 세 개 조항이 따라 붙어 네 개 조항으로 확대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소 정책에 관해서는 한국 인터넷 정보 센터 안에 주소 위원회가 인터넷 도메인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정통부 장관이 갖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이미 그 기능 수행을 하고 있는 주소 위원회 측하고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나중에 이 법안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어떤 자리에서 저희가 그것을 알게 되어 의견을 내놓고 토론하자 해서 어저지로 이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미 전달한 바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정통부 측에서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통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견 수렴의 현실입니다.

아까 나과장님께서 현실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 논리가 통신 공간에도 그대로 연장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말씀하셨는데 사이버 스페이스의 특성상 이런 원칙론만 가지고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정보 통신 공간에 있어서는 사법 강화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물리적인 영토 이외에 사법적인 관할 영역을 넘어서 수 없는데 이미 인터넷은 초국가적이기 때문에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법적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

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도리가 없습니다. 또 인터넷의 초국가성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게 되면 될수록 국내에서 존재하던 정보 서비스가 그 규제를 피해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국내에 이미 존재하면서 해외로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를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할 때 사이버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정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하루 속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 내용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법안에서 보면 사실상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일 뿐입니다. 지금 이 법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 혹은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가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어서는 인터넷이라는 통신 공간에 있어서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 매체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존재하는 대중적인 매체, 영화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대중 매체와는 달리 그것이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공급자가 적은 수도 아니고 그 공급자 이외에 비영리적인 목적의 정보 제공자도 있고 개인도 존재하는데 그것이 몽땅 다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전의 대중 매체에 있어서는 제한된 숫자의 공급자만이 심의 대상이 되지만 사이버 스페이스 자체를 하나의 매체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 권한을 정통부가 갖는다고 했을 때에는 모든 사항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심의 받을 수 있는 심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네티즌들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전 검열이 아니고 사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 본질을 벗어난 실제로 핵심적인 문제 제기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나과장님께서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규제다 하십니다만, 자율적인 규제가 아닌 것은 법 내용만 보아도 너무나 확실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의 내용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규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율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규제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법을 안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자율 규제 방법입니다. 아까 유진식 선생께서 이 법안의 무리한 점, 법